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일, 강선우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

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복지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중앙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¹⁾ 중앙장애아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

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각 시·도에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전달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²⁾

다만,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한다는 특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도 의견이 있었음.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동시에 의무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임.

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
규정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입법례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그 밖의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 ----- ----- -----하 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u>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u> 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시장</u>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u> 은 지역센터의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③ (개정안과 같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u>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및 절차 등</u>----- ----- -----.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 ----- ----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 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 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 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u>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u>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② <u>시장</u>----- ----- ----- -----.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u> <u>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u> <u>절차 등</u>----- -----.
---	--